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190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출년월일 : 2007.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 첨 부 :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
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

제정 1973. 07. 01 조례 제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 지구(이하 "구획정리사업지구"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담금은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는 구획정리 지구안의 토지 건물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부담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부과액)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구획정리를 위한 공사비 보상금 기채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의 총액에서 보조금과 잡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부과기준) 부담금은 구획정리지구안에 있는 토지 기타 시설물의 구획정리전과 정리후의 평정 가격을 비교한 증차액 또는 정리후 면적의 비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획정리를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부담금액 추정) 사업후 수지청산액이 사업비 수지에정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부담금을 견적하여 추정 또는 환부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납부) 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금액외에 이에 상당한 구획정리지구안의 토지로써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 납부 의무승계) ①구획정리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의 이전된 때에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또는 그 취득자가 승계한 것으로 한다.

②전항 소유권의 이전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사자 연서로서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